신안산대학교	교원 소속 학과 변경에 관한 규정	규 정 번 호	2-4-23
		제 정 일 자	2017. 7. 14.
		개 정 일 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생정원조정 등의 학과개편에 따른 학과의 신설·폐지·통합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에 따라 전공이 불일치되어 학과 소속이 변경되는 전임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변경신청) 소속 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학과개편 등에 따라 소속 학과 변경 적용 대상으로 통보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속 변경 의견조회) 소속 학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소속변경 희망학과에 의견서 [별지 제2호]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신설학과로의 전환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5조(소속 변경심의) 소속 학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소속변경 학과의 의견 및 교육과정 등 제반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소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적 소속변경) 총장은 제2조와 별도로 교원운영정책상 교원의 소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소속 학과 변경신청서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2"></td><td>학 과</td><td></td><td>직 위</td><td></td></tr>
<tr><td>최초임용일</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학력사항</td><td>학위</td><td colspan="2">대학명</td><td colspan="2">학과 (전공)</td><td>취득일</td></tr>
<tr><td>학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석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박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소속변경 학기</td><td colspan="6"></td></tr>
<tr><td>소속 변경 학과</td><td colspan="3"></td><td>소속 변경 시 담당과목</td><td colspan="2"></td></tr>
<tr><td>소속변경 사유</td><td colspan="6"></td></tr>
</table>

위와 같이 소속 학과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소속 변경 학과의견서

위와 같이 소속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과 :

학과장 : _____㊞

학과교수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